

충청북도가축위생시험소조례중개정조례 (안)

의안 번호	48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5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안 이유

- 가축질병의 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며, 축산물 등의 시험 검사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해 온 가축위생시험소 지소 증설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축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설치를 조례로 규정하고,
- 조례 내용 중 연구직 직렬의 명칭 등 일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 골자

- 가축위생시험소 중부지소를 설치하고, 이와 관련한 지소 관할 구역 조정
 - 북부지소 : 충주시, 음성군
 - 남부지소 : 보은군, 옥천군, 영동군
 - 제천지소 : 제천시, 단양군
 - 중부지소 : 괴산군, 진천군
-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(대통령령)의 시행에 따른 연구직 공무원의 직렬 조정
 - 지방농업연구관 → 지방가축위생연구관
- 지소장 중 중부지소장은 6급으로 보임하도록 단서규정 신설

□ 근거 법령

- 지방자치법제105조
- 지방자치법시행령제40조제2항

충청북도가축위생시험소조례중개정조례 (안)

충청북도가축위생시험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및 제6조 중 “지방농업연구관” 을 “지방가축위생연구관”
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에 단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중부지소의 지소장은 지방가축위생연구사 또는 지방수의
주사로 보한다.

제6조제4항 중 다음을 아래 표와 같이 한다.

명 칭	위 치	관 할 구 역
충청북도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	충주시 금릉동 187 - 12	충주시·음성군 일원
충청북도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	영동군 영동읍 동정리 39	보은군·옥천군·영동 군 일원
충청북도가축위생시험소 제천시소	제천시 고암동 145 - 20	제천시·단양군 일원
충청북도가축위생시험소 중부지소	괴산군 사리면 방축리 709	진천군·괴산군 일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0월 25일부터 적용한다.